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안내



KIWATEC 한국물기술인증원

CONTENTS

I.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관리 필요성

II.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인증제도 개요
- 관련법령
- 인증대상 범위
- 인증제도 운영

III. 연구용역 및 개선 추진방안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관리 필요성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 관리 필요성

- 1840년 이후 인류의 건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현대 의학계 업적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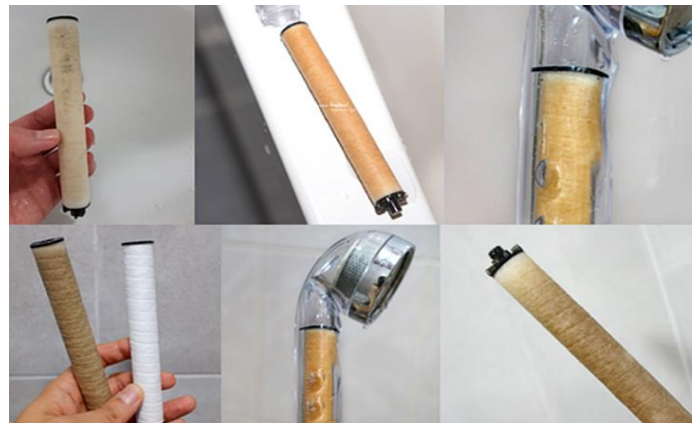
(‘07.1.,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 위생적 안전성 확보 | 수도용 자재의 위생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

사회의 산업화, 고도화에 따른 발전



→ 삶의 질에 대한 의식수준 향상



→ 위생적 안전성에 대한 담보 요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관리 필요성

/ 구조적 안전성 확보 | 매년 노후 수도관 증가로 안전성 확보 시급

상수관로 현황 | 전체 217,150km 중 21년 이상 관로 **33%**(71,686km)

(단위 : km)

구 분	총 계	5년 이내 (2014~2018년)	6~10년 (2009~2013년)	11~15년 (2004년~2008년)	16~20년 (1999~2003년)	21년 이상 (1998년 이전)
총 계	217,150 (100%)	36,621 (16.9%)	45,231 (20.8%)	35,704 (16.4%)	27,908 (12.9%)	71,686 (33.0%)

[2018 상수도 통계, 환경부, 2020]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도로 균열, 지반침하 가능성 존재



싱크홀 발생 (뉴스1)



도로 침수 (MBC)



예산 낭비 (전북일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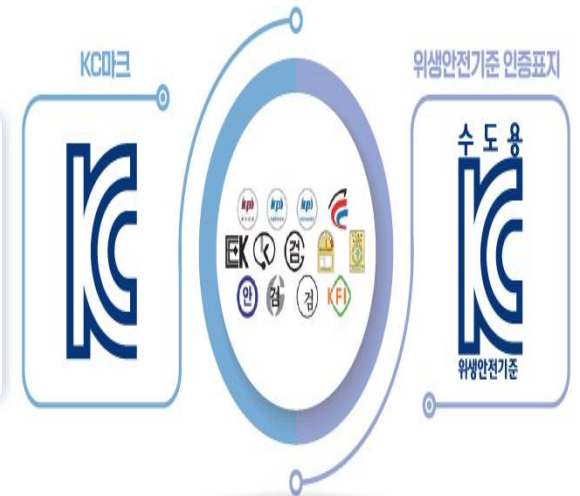
/ 개요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溶出) 관리정책**에 따라 '11년부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시행(수도법 제14조 제1항)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유해물질 용출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한 제품**에 대해서만 제조·유통이 가능한 법정 의무인증제도

/ 국가인증통합마크(Korea Certification mark)

- '**제품안전**'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8개 부처* 23개 법정 의무인증제도의 인증마크를 국가통합인증마크(KC)로 통합

※ 환경부: 위생안전인증, 정수기 품질검사, 기상측기형식승인,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 검정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근거법령: 수도법 제14조1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인증규칙(환경부령)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① 수도시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대상범위)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인증주체)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공급·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연구 목적으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결과 제8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③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24조의2)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2항에 따라 단체표준을 받은 제품으로써 같은법 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써 같은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
6.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수도용 자재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재나 제품 (적합인증, 계량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형식승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수입·공급·판매의 정지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호 ~ 5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호 ~ 2호 (생략)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2의2(행정처분의 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재신청 제한기간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취소			6개월
나.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6개월
다.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인증취소			6개월
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취소			1개월
마.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인증취소		6개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시행령 제24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 '16년 얼음정수기 니켈도금 박리 사건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니켈항목 추가('19.6.13.)



▶ 항목별 위생안전기준

항목	기준	항목	기준
가. 카드뮴	0.0005mg/L 이하	처. 음이온 계면활성제	0.02mg/L 이하
나. 수은	0.0001mg/L 이하	커. 1, 1, 1-트리클로로에탄	0.01mg/L 이하
다. 셀레늄	0.001mg/L 이하	터. 페놀류	0.0005mg/L 이하
라. 납	0.001mg/L 이하	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mg/L 이하
마. 비소	0.001mg/L 이하	허. 맛	이상 없을 것
바. 6가크롬	0.005mg/L 이하	고. 디클로로메탄	0.002mg/L 이하
사. 시안	0.001mg/L 이하	노. 시스-1, 2-디클로로에틸렌	0.004mg/L 이하
아. 니켈	0.007mg/L 이하	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01mg/L 이하
자. 질산성 질소 및 아질산성 질소	1mg/L 이하	로. 냄새	이상 없을 것
차. 불소	0.15mg/L 이하	모. 색도	0.5도 이하
카. 사염화탄소	0.0002mg/L 이하	보. 탁도	0.2NTU 이하
타. 1, 2-디클로로에탄	0.0004mg/L 이하	소. 잔류염소의 감량	0.7mg/L 이하
파. 1, 1-디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오. 에피클로로히드린	0.01mg/L 이하
하. 1, 1, 2-트리클로로에탄	0.0006mg/L 이하	조. 아민류	0.01mg/L 이하
거. 트리클로로에틸렌	0.003mg/L 이하	초. 2, 4-톨루엔디아민	0.002mg/L 이하
너. 벤젠	0.001mg/L 이하	코. 2, 6-톨루엔디아민	0.001mg/L 이하
더. 아연	0.3mg/L 이하	토. 포름알데히드	0.008mg/L 이하
러. 철	0.03mg/L 이하	포. 아세트산비닐	0.01mg/L 이하
머. 구리	0.1mg/L 이하	호. 스티렌	0.002mg/L 이하
버. 나트륨	20mg/L 이하	구. 1, 2-부타디엔	0.001mg/L 이하
서. 망간	0.03mg/L 이하	누. 1, 3-부타디엔	0.001mg/L 이하
어. 염소이온	25mg/L 이하	두. N, N-디메틸아닐린	0.01mg/L 이하
저. 증발잔류물	50mg/L 이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수도법 제78조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5. (생략)

▶ 수도법 시행령 제67조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업무

2. 법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업무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894호)
 - 수도법 제14조제8항에 근거하여 인증대상 제품의 범위, 방법 및 절차, 검사기관의 지정, 수수료, 인증표시방법, 정기검사 등 인증제도 운영 세부사항 규정

조문 구성	주요내용
제1조(목적)	『수도법』제14조 및 제14조의2에서 명시한 위생안전기준 인증관련 사항을 규정
제2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세부사항 별표1)
제3조(학교, 연구기관 등의 범위)	『수도법』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인증대상 예외 명시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학교 / 법인인 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연구조합 등
제4조(인증 신청)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규정
제5조(인증의 방법 및 절차)	인증절차 및 절차 별 세부내용을 규정 → 절차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심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조문 구성	주요내용
제6조(공장심사)	공장심사 항목 규정(별표2), 공장심사 항목 중 <u>일부생략 규정</u> → KS인증, 우수단체인증, KWWA인증, 품질경영체제(ISO), 안전인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타 법률근거 한 품질보증체계
제7조(제품시험)	「수도법」 제1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환경수도연구원(KEW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천, 울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제8조(인증서 및 인증표시)	인증심의 결과에 따라 인증서 발급(인증정보망에서 <u>상시 발급</u> 가능) <u>인증제품 및 포장에 인증표시 실시 규정</u>
제9조(인증의 변경 신청 등)	인증 변경신청에 대한 사항 규정 → 사유 : 생산공장 이전, 생산시설(공정) 변경, 인증제품 재질변경 → 기간 : 사유발생일 부터 30일 이내 실시 → 기타 : 세부적인 사항은 인증원 운영규정으로 정함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조문 구성	주요내용
제11조의2(정기검사의 주기)	<u>정기검사 주기: 2년</u>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인증만료(2년)가 되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토록 규정 → 만료일 이전에 신청 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 정기검사 시기가 상이한 제품(2년 주기내)도 동시 신청가능
제11조의5(인증제품의 수시검사)	인증제품을 대상으로 제품시험 을 실시하여 수시검사를 하도록 규정
제12조(인증서 재발급)	1. 대표자 변경, 2. 상호변경, 3. 인증서 훼손 및 분실, 4. 인증서 표시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15조(수수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규정 - 신청비: 50만원 + 25만원/추가 건 - 여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5급 상당) - 엔지니어대가-산업공장-고급기술자 노임단가(268,051원, '21년 기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2. 관련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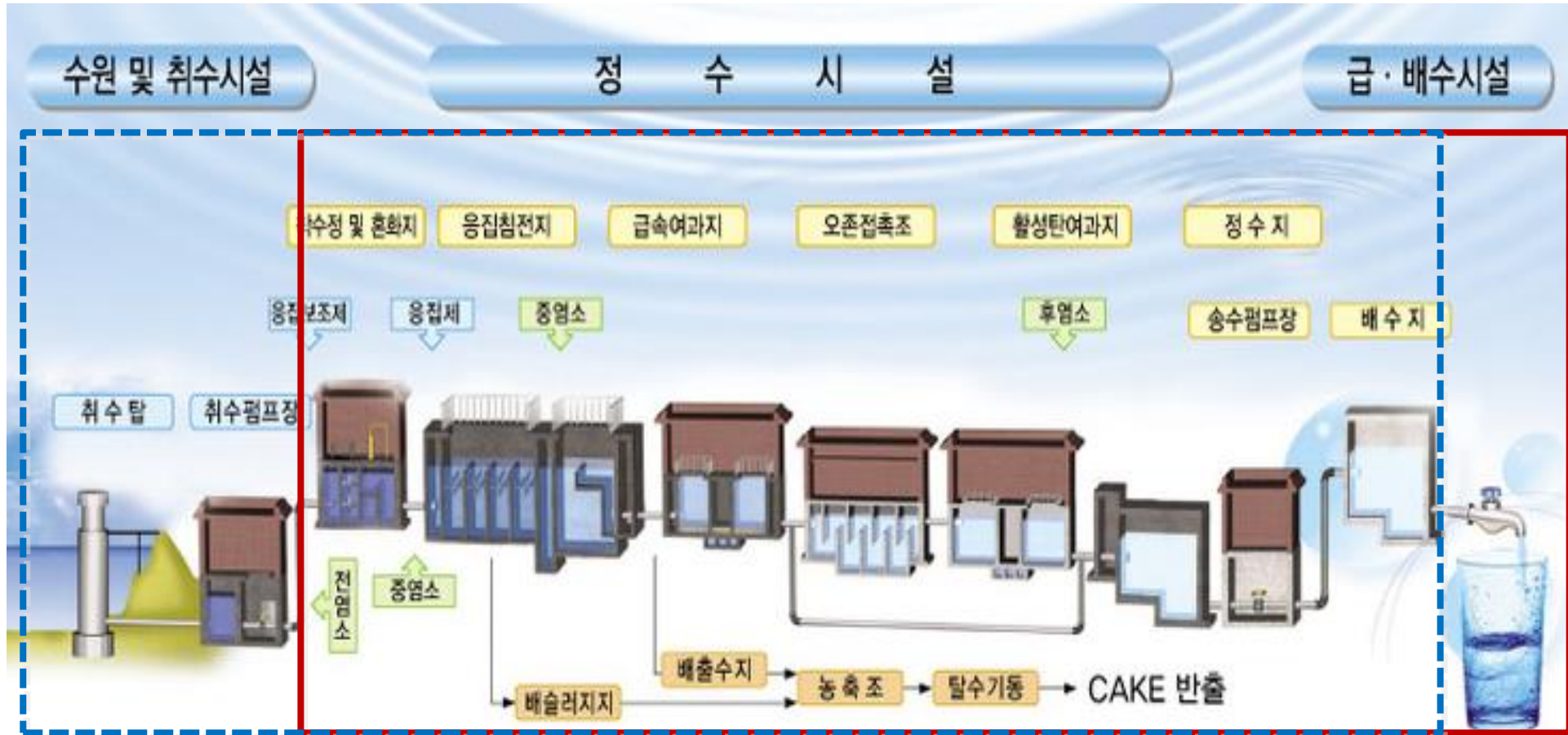
조문 구성	주요내용
제16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수거 등 조치)	『수도법』제14조 제4항(표시사항 위반), 제14조제8항(정기검사, 수시검사 부적합) 사업자는 1.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작성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 3. 수거등의 조치를 완료 한 후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보고 ※ 수거 적용 범위: 제품시험을 의뢰한 시료 제품의 제조일자에 생산된 제품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제조되어 유통·판매된 모든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3. 대상범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대상 범위



--- 성능인증
— 위생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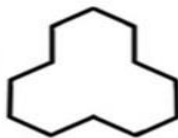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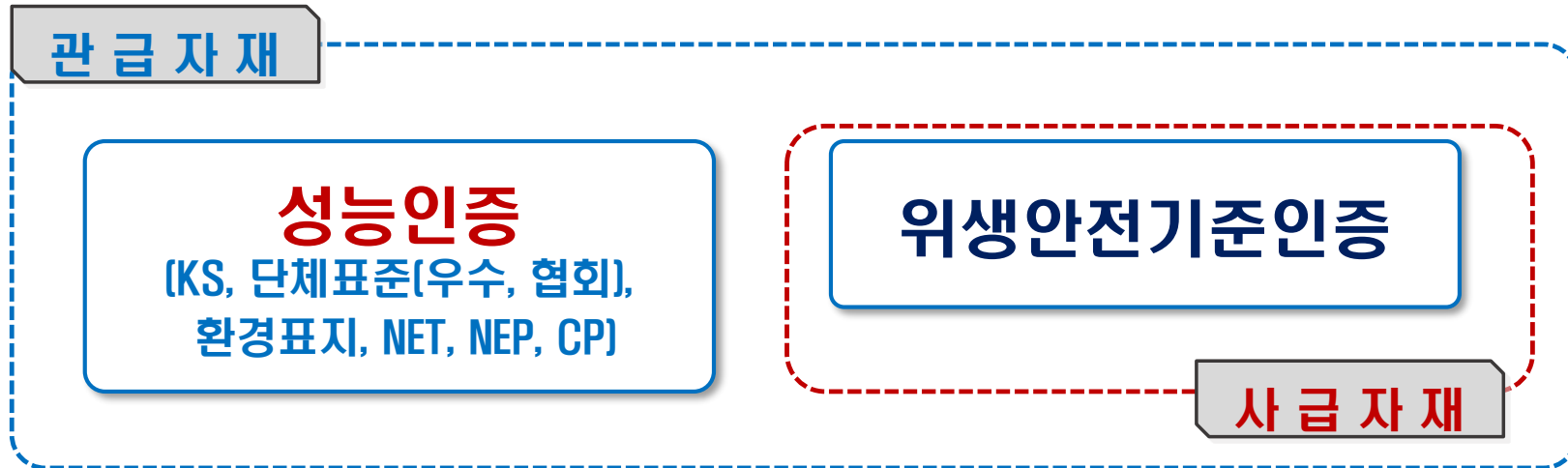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3. 대상범위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대상 범위

- ▶ 관급(일반수도, 전용상수도): 위생안전기준인증 + 성능인증
- ▶ 사급(아파트, 개인주택 등): 위생안전기준인증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3. 대상범위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구분	인증 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에 관한 규칙 [별표1]
1. 수도관	가. 주철관류 등 금속관류	나. 합성수지관류 등 비금속관류	
2. 기계 및 계측·제어용 자재 및 제품	가. 밸브류	나. 펌프류 다. 수도꼭지류 라. 유량계류 마. 수도미터류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가. 콘크리트 수조, 강제 수조 및 현장시공에 의한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는 도료 나. 그 밖에 음용(飲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		
	1. 정수시설	가. 콘크리트수조, 강재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어지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나.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 다. 가스켓 및 씰링유	환경부 고시
	2. 정수 시설 외	가. 콘크리트 수조, 강재수조 및 관 등의 안쪽 면에 사용되어지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나. 가스켓 및 씰링류 다. 관 중간에 분기, 분배, 점검, 누수 및 동결방지, 부식억제 및 기타 음용수 공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자재와 제품 라. 말단급수설비 제품류 : 음수기류 마. 말단급수설비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 1) 절수부속 및 절수기기류, 2) 관류, 3) 밸브류, 4) 샤워기기류 및 필터기기류(추후 개정요청 예정) 바. 급수설비에서 온수를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 1)관류, 2) 밸브류, 3) 가열장치류, 4) 온수용 열교환기, 5) 온수용 수도계량기, 6)온수저장수조, 7)온수순환펌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4. 인증제도 운영현황

/ 인증현황

● 인증제품 현황

- 전체 인증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20년 말 기준 총 2,045개 제품 인증 유효

<연간 인증현황>

구분	계	'14	'15	'16	'17	'18	'19	'20
인증제품(누적)	2,045	920	1,055	1,209	1,374	1,576	1,743	2,045
인증건수	—	94	135	154	165	202	167	302

<분류별 인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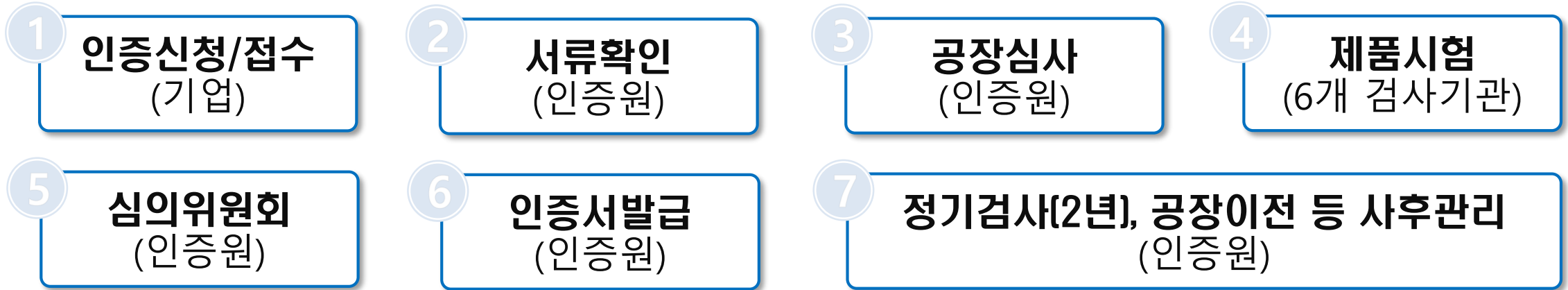
구분	계	금속 관류	비금속 관류	밸브류	펌프류	수도 꼭지류	유량계류	수도 미터류	도료류	기타
인증제품(누적)	2,045	412	215	371	124	203	19	64	101	536
비율(%)	100	20.1	10.5	18.1	6.1	9.9	0.9	3.1	4.9	26.2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4. 인증제도 운영현황

/ 인증절차



/ 심사의 종류

신규인증



- ① 최초 인증
- ②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자가 받아야 하는 의무 인증

인증변경



- ① 공장이전, 공정변경 ② 종류, 등급, 호칭 변경 및 모델명 추가
- ③ 재질 변경 등

정기검사



- ① 신규인증 후 2년 이내 ② 신규인증과 동일 절차 및 방법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4. 인증제도 운영현황

/ 인증절차 상세도



- 인증취득기간 : 국내기업 기준 약3~4개월
- 인증비용 : 신규 1제품 기준
 - 공장심사(심사원 2인, 1일) : 120 ~ 150만원
 - 제품심사(시험기관 납부) : 100~250만원
- 시료채취(공장심사 합격시)
 - 일반시료채취(시료채취 신청 불필요)
 - 재질 및 호칭을 고려하여 각 제품별 시료를 채취
(다만, 기업 요청 시 종류 및 등급, 호칭을 고려하여 대표시료 선정 가능)
 - 시료 재채취 신청(심사원 수당 및 여비 추가 발생)
 - 시료 부족 등의 사유로 당일 시료채취가 불가능 또는 제품시험 필요수량 대비 부족할 경우
 - 시료는 준비되었으나, 외부환경 등의 사유로 제품 품질이 의심될 경우
 - 기업의 요청에 따라 시료채취 심사를 별도 일정으로 연기 요청하는 경우



4. 인증제도 운영현황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s://kctap.or.kr>)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인증제품 인증제도 인증신청 고객센터
인증취소 현황 알림

신규인증신청

수도용 제품에 대해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

인증변경신청

생산공장을 이전 하거나
생산시설, 생산설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

재발급 신청

기업의 대표자 혹은 회사명,
생산기업의 주소 변경과
기타 인증 신청

+

내 신청현황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
신청 현황을 확인

+

정기심사신청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정기적인 인증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

인증서 출력

인증취득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출력

+

영문인증서 신청

인증제품의 영문 인증서
발급 신청을 하시는 경우

+

인증제도란?

| 인증제품조회

인증번호	KCW - 2021 - 0000	Q
제품명		Q
기업명		Q

| 로그인

안녕하세요 김지구님! My Page Log Out

인증신청	인증제품	질의응답
임시저장 0건 공장심사 0건	정상 0건	답변중 0건
서류심사 0건 제품심사 0건	취소 0건	답변완료 0건

전체
공지사항
자은질문
질의응답
알림마당

- KC 관련 2021.06.22
- 수전 인증 문의드립니다. 2021.06.21
- 기준 검사설비는? 2021.06.15
- 필터장치형 수도계량기 설치 ... 2021.06.15
- KC인증품목 생산제조 중단에 ... 2021.06.14
- 수전 인증관련 2021.06.14
- 제조중단 2021.06.14
- KS 인증 적용유무 및 비용... 2021.06.11

더보기 >

불법불량제품신고

인증대상과 범위

인증관련 법규

최근인증제품

질의응답 사례집

법령정보검색

수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
관계법령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증마크

인증 표시 기준 및 제도법과
표시 원칙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위생안전인증팀 문의

연락처 바로가기

무엇이든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장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

공장심사를 위한 체크포인트를
확인 하실 수 있는 동영상입니다.

불법·불량제품 문의

(053)601-6392

미인증제품 문의

WATER KOREA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위생안전기준 주요 안내사항 1

종류·등급 및 호칭				모델명
종류 및 등급		호칭(mm)	물접촉 주요재질	
접선류 임펠러식	단갑 건식	15, 20, 25	- 하부외갑 : 구리합금 - 스트레이너 : POM - 임펠러 : 노릴 - 상부내갑 : 노릴(유리섬유 함유) - 임펠러부싱, 자석보호캡 : POM (몰리브덴 함유)	KIWATECAA
휠트만식	건식	80, 100, 150, 200, 250, 300	- 외갑 : 주철+PE코팅 - 임펠라자석 : 사마륨코발트 - 피모트, 나사, 너트, 핀 : 스테인리스 - 임펠러, 자석캡:나일론 - 임펠러받침, 원기어축받침 : 세라믹, 초경합금	KIWATECA-1 KIWATECA-2 KIWATECA-3

인증서 상	조달청 납품 용	유통업체 납품 용
KIWATEC-A	KIWATEC-B	KIWATEC-C

모델명 작성 방법

전체 모델명 작성 필수 (대표 모델명 작성X)

1. 종류·등급 : 모델명 = 1 : 1 (O)
2. 종류·등급 : 모델명 = 1 : 多 (O)
3. 종류·등급 : 모델명 = 1 : 多 (X)
Ex) 납품 용도에 따라 모델명 다르게 사용
→ 같은 모델에 여러 개의 모델명 인정 X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위생안전기준 주요 안내사항 2

[붙임 1] 인증범위 확인 내용				
1. 위생안전기준 인증(KC) 신청 현황				
-제품명 : 수도미터 (KCW-2021-XXXX)		-용 도 : 급수설비		-최초인증: 2021.
종류·등급 및 호칭			모델명	비고
종류 및 등급	호칭(mm)	물접촉 주요재질		
접선류 임펠러식	단갑 건식	15, 20, 25	KWATECA KWATECB KWATECC KWATEC1	KW-1
- 하부외갑 : 구리합금 - 스트레이너 : POM - 임펠러 : 노틸 - 상부내갑 : 노틸(유리섬유 함유) - 임펠러부싱, 자석보호캡 : POM (몰리브덴 함유) - 임펠러자석 : 세라믹(페라이트) - 피보트, 너사, 너트 : 스테인리스 - 상부오링 : NBR - 임펠러받침 : 세라믹(사파이어)				
* 제품의 재질을 고려하여 KW-1(모델명:KWATEC1, 호칭(mm):15)을 대표시료로 하여 시험결과 대표시료가 합격되면 대표시료군 전체를 합격처리하고, 대표시료가 불합격되면 대표시료군 전체를 불합격 처리함에 신청업체가 동의함 * 인증심사 신청 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참고사항이며, 공정심사에서 인증심사원이 확인하여 기재한 사항만 인정함				
위와 같이 신청품목, 종류, 재질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합니다.				
2021년 월 일				
인증심사원		입 회 자		
한국불기술인증원 :	홍길동 (인)	대 표 자 :	김대표 (인)	
한국불기술인증원 :	홍길동 (인)	품질관리담당자 :	이 담당 (인)	

인증서 발급 기준

인증신청 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는 참고사항



공장심사에서 인증심사원이 확인하여
공장심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만 인정



공장심사보고서 상 인증 범위 확인 필수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 위생안전기준 주요 안내사항 3

3. 시료채취 및 제품 품질시험 의뢰현황

가. 시료채취 내역

품목	종류·등급	재고량	시료 크기	시료수 (로트번호)	시험방법 및 시험항목
원심펌프	입형다단 흡입구경 : 25 A 케이싱:주철+에폭시 임펠라:스테인리스	15 대	n = 1	1 개 [(20184028)] KMP-1	※용출시험 : - 원심펌프 : 급수설비 - 부스터 펌프 시스템 : 일반수도용자재 ※밸브 및 이음쇠류 보정여부 : ○ ○적용항목 :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별표1의2(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재질 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횡형다단 흡입구경 : 25 A 케이싱:스테인리스 임펠라: MPPO	55 대	n = 1	1 개 [(20343010)] KMP-2	※ 시료번호 및 시험항목 : -KMP- 1: “나+다+하+미+비+어+처” -KMP- 2: “나+카+미+비+처” -KMP- 3: “가+나+다+마+하+미+어+비+처” -KMP- 4: “가+나+마+카+어+미+비+처” 항 에 따른다
부스터 펌프 시스템	입형다단 원심펌프구성 흡입구경 : 50 A 케이싱:주철+에폭시 임펠라:스테인리스	12 대	n = 1	1 개 [(20184023)] KMP-3	○시험방법 : 환경부고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 에 따라 시험
	횡형다단 원심펌프구성 흡입구경 : 25 A 케이싱:스테인리스 임펠라: MPPO	20 대	n = 1	1 개 [(20343004)] KMP-4	○판정기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 별표1의2(항목별 위생안전기준 적용)

인증 취소 시 수거 권고 기준

공장심사보고서 항목 중

[3. 시료채취 및 제품의 품질 시험 의뢰 현황]에
로트번호 및 생산(제조)일자 기재



인증 취소 시, 해당 로트번호 및 생산(제조)일자
기준으로 수거 권고 진행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연구) 미규제 유해물질 용출여부 등 모니터링 강화

/ 개요

- ▷ 최근 언론 등에서 수도용 자재 인증제도에 대해 연속적 문제 제기
 - 에폭시 도장관 **비스페놀A** 검출, 저수탱크 실링제 **환경호르몬(DINP)**검출 등
- ▷ 수도용 자재와 제품 **재질 다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으로 위생안전기준 관리기준 강화추진
 -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위생안전기준 **규제물질 관리방식의 전환**
(사후 → 선제적 대응) 필요

/ 주요내용

- ▷ 사회적 이슈, 유출 가능성 및 인체 유해성이 높은 물질 우선 선정 및 모니터링
 - 환경호르몬(**비스페놀A**, **DINP**), 중금속(**알루미늄**, **안티몬**, **바륨**, **비스무스**)등
- ▷ 용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위생안전기준 재질별 적용항목 고도화 마련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연구) 온수공급용 자재및제품의위생안전관리 강화

/ 개요

- ▶ 온수용 저수조의 보수 후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온수 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관리강화** 필요

* (온수탱크내 페놀 검출) 아파트 온수탱크 코팅 공사 후 악취 및 페놀검출 ('21.2.4., SBS 8시뉴스)

- ▶ 안전한 온수 사용을 위해 온수 공급용 자재의 **용출시험이 필수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 주요내용

- ▶ 온수 공급용 자재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 검토 및 제시
- ▶ 온수 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적정 공정시험법(안) 제시
- ▶ 온수 공급용 자재 및 제품의 시공관리 개선(안) 마련

- 설치·시공·보수 시 유의사항 준수를 위한 방안 및 검사방안 마련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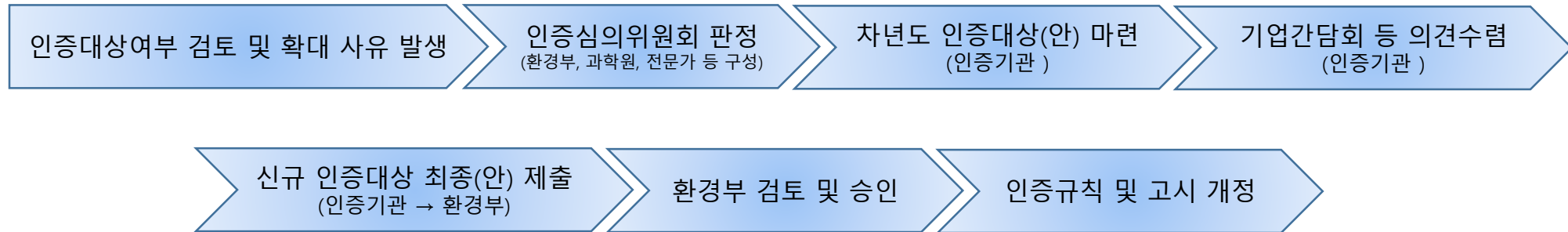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개선) 인증대상범위 개선체계 마련

- ▷ 신규 개발제품 또는 인증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확대 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 **인증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하여 관련 규정에 반영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상시 개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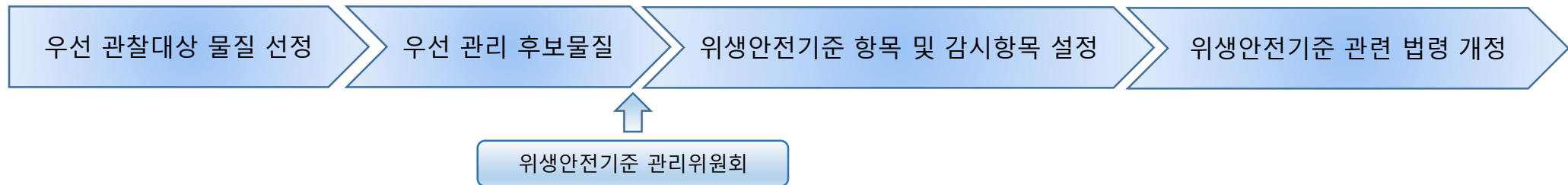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개선)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강화

- ▷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우선순위 관찰 대상물질 선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위생안전 관리기준 강화**
-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업무 관련 **고시* 제정** 및 인증기관 고유 **수행업무 역할 부여를 통해 업무수행 타당성 및 연속성 확보**

* 가칭 '위생안전기준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위생안전기준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 체계>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개선)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강화

▷ 추진방안

- (단기방안) 현재 인증원은 시험·분석 기능이 없어 미규제 유해물질 관리 모니터링 및 공정시험방법 개선 연구용역* 추진

* 용역은 KC검사기관에서 수행, 소요예산은 250,000천원/년, 인증원 전담인력 1명 필요(요구)

- (중·장기방안) 신규 제품의 신속한 인증대상범위 적용을 위한 공정시험방법 마련 및 미규제 유해물질의 연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인증기관 자체 시험·분석 기능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연구용역 및 개선추진방안

(개선) 인증업무 홍보 및 기업과 소통강화

- ▶ 국민 및 수도사업자, 관리사무소 등 불법·불량 제품 및 미인증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체계 구축**(팜플렛 및 사례집 배포, 인증 연찬회 개최 등)
- ▶ 인증제도 정책 추진방안 공유, 인증제도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인증기관↔ 조합, 협의회, 협회 등)
 - WATER KOREA, 국제물주간 등 **전시회에 상담부스를 운영**하여 기업 관계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 **(찾아가는 인증심사실 운영)** 인증원의 지리적 여건으로 대면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심사 단계 또는 쏠과정 맞춤형 인증 지원
 - 내부심사원 및 외부전문가(검사기관)를 활용하여 인증심사 상담